

5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사고성 사망재해는 떨어짐, 교통사고, 감김·끼임, 넘어짐 및 날아온 물체에 맞음 등
5대 사고성 사망재해 유형에서 72%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

- ▶ 유해·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·보건 표지 설치 또는 부착
- ▶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, 울타리 및 덮개 설치
- ▶ 사다리는 고정하여 사용하거나 동료가 붙잡아 주기
- ▶ 출입문은 쉽게 여닫는 구조로 설치
- ▶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 제거
- ▶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
- ▶ 작업 장소에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
- ▶ 벨트·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
- ▶ 기계·설비를 정비·수리할 때 운전정지 및 표지판 설치
- ▶ 화물용 승강기 및 간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금지

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

- ▶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
- ▶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
- ▶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,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
- ▶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(예: 중량물 취급방법, 제한속도 등) 준수
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은?

〈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적발 즉시 형사적·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.〉

- ➔ (형벌)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 (과태료)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➔ 재해발생 시 : 인력손실, 산재보험료 할증, 민사보상, 생산차질 등이 있음

※ 위 내용은 5대 사망재해 유형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, 이 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)을 참고하셔야 합니다.